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자격)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제3조 (시험방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 제5조 (원서)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지도의(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내시경 세부전문의에 한함) 추천서
3. 수련기록부 사본(별지 제1호 서식)
4.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자가평가서 : 홈페이지 세부전문의 접수에서 자가 평가하여 업로드
5. 수련증명서(전문의 취득 후 1년이상의 소화기내시경 수련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6. 사진: 스캔파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제6조 (점수 취득)

자격시험을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작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대회 1회 이상, 연수강좌 1회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한다.

인 정 항 목	교육종류		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학술대회 1회	추계학술대회	1점 / 1일
		국제학술대회(IDEN)	2점 / 2일
	연수강좌 1회	세미나	1점 / 1일

## 제7조 (시험위원의 위촉)

1. 자격심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을 위한 고시위원과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 (출제 및 시험실시)

시험문제는 자격심사위원장 책임하에 고시위원이 출제한다.

## 제9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되 영상매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하되 모든 응시자가 동일질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 **제10조 (채점)**

채점은 자격심사 위원장 책임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사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의 결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합격결정은 필기시험 35점 이상, 구술시험 15점 이상이어야 하며,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3. 이사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 **제12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에 대한 보관)**

세부전문의 응시 원서 및 자료는 학회 NAS(Network-Attached Storage)에 5년간 보관한다.

#### **제14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01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02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14년 2월 11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16년 2월 16일 개정되었다.

본 규칙은 2017년 5월 23일 개정되었다.